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24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 박덕흠 · 엄태영 · 조지연

강승규・고동진・이종배

김예지 · 김용태 · 김재섭

김장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해 국내 농가인구는 200만 4,000명으로 젊은 층의 도시 이동과 농촌 출생률 저하,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등으로 매년 줄어들어 들고 있으며,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55.8%에 이르는 수준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농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영농 상속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영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농림어업을 제외한 제조업·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이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이에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 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고, 젊은 영 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피상속인이 5년 미만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경우: 50억원
- 2. 피상속인이 5년 이상 10년 미만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경우: 70억원
- 3.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경우: 100억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농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	
에 상당하는 <u>금액(30억원을 한</u>	- 금액
<u>도로 한다)</u> 을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공제한다. <후단 신설>	<u>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u>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u> <신 설></u>	1. 피상속인이 5년 미만 계속하
	여 영농에 종사한 경우: 50억
	<u>원</u>
<u> <신 설></u>	<u>2. 피상속인이 5년 이상 10년 미</u>
	만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경
	<u>우: 70억원</u>
<u> <신 설></u>	3.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
	<u>여 영농에 종사한 경우: 100억</u>
	원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